

의안번호	2207663
의 퇴 인	조경태의원
회 답 일	2025. 2. 20.
추 계 번호	25B037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80만원(연평균 1,65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변동: 2026~2030년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안 제1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1,656	△1,656	△1,656	△1,656	△1,656	△8,280

주: 본 추계 결과는 2025년 1월말 기준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이 향후에도 변동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감면율은 100%를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향후 소금제조업자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에서 감면율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제1항제7호의2 신설(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함.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u> <u>7의2.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염전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 설치를 목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u>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3조제1항제7호의2 신설(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소금제조업자 등”이라 한다)가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전액 감면)로 가정하여 추계함

-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감면 비율 등을 알 수 없음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소금제조업 등과 유사한 업종인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비율(전액 감면)¹⁾을 적용하여 추계

1) 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

- 2025년 1월말 기준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내용(인수관·배수관의 지름,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등)이 향후에도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 내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소금제조업자등의 과거 점용료·사용료 징수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허가 내용(인수관·배수관의 지름,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등)이 변동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소금제조업자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안 제1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

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 15. (생략)

② ~ ⑧ (생략)

법 시행령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점용·사용 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점용료·사용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2025년 1월말 기준 소금제조업자등의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내용(인수관·배수관의 지름,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등)이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면율은 100%(전액 감면)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감소를 추계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말 기준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총 15건으로 해당 건들의 월별 점용료·사용료 합계는 총 138만원임

[표 1]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2025년 1월 기준)

연번	지역	관의 지름(mm)	점용·사용허가 기간	월별 점용료·사용료(만원)
1	순천시	350	2021. 1. 14. ~ 2026. 1. 13.	22
2	신안군	300	2022. 8. 19. ~ 2027. 8. 18.	16
3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4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5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6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7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8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9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10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11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12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13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14	신안군	75	2023. 2. 24. ~ 2028. 2. 23.	7
15	신안군	300	2024. 4. 22. ~ 2029. 4. 21.	16
합 계				138

주: 1. 2025년 1월말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한 결과임
 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인·배수관 지름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산정 ※ [참고자료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소금제조업 등과 유사한 업종인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비율(100%) 적용

[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유형별 감면율

구 분	감면 대상 (공유수면법 제13조)	감면율 (시행령 제14조)
비영리 사업	○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100% (전액감면)
해양환경 관련	○ 오염물질 확산 방지 목적으로 오탉방지막 설치 ○ 「항로표지법」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관리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방제장비 등 설치	
수산업 관련	○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 ○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포락지 등	○ 포락지, 개인 소유권 인정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	
특정구역에 관한 규정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 외국인 투자촉진 등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매립에 따른 흙·돌 채취 및 준설행위 등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로 기반시설 등 대상	
산업 활성화 및 지원	○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등	50%
위기지역 등 지원	○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일부 업종	

- 개정안에 따라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80만원(연평균 1,65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변동: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월별 점용료·사용료(A, 만원)	138	138	138	138	138	-
개월수(B, 개월)	12	12	12	12	12	-
감면율(C, %)	100	100	100	100	100	-
감면액(C=A×B×C, 만원)	1,656	1,656	1,656	1,656	1,656	8,280

주: 본 추계 결과는 2025년 1월말 기준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이 향후에도 변동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감면율은 100%를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향후 소금제조업자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에서 감면율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2025년 1월말 기준 소금제조업자등이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이 향후에도 변동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감면율은 100%를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향후 소금제조업자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에서 감면율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계 및 최근 5년간 점용료·사용료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계

-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 (절차) 공유수면관리청*이 납부자에게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 징수하고,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지방관리항) 시·도지사, (그 외) 시·군·구청장
-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점용료·사용료는 국가 수입,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관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자체 수입
 - － 다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광물채취의 경우 그 점용료·사용료의 50%를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 수입으로 귀속하고, 시·도지사는 그 수입금을 해당 구역 인근 3개 이내 시·군·구에 교부(수산자원 조성·수산업 발전 목적 사용)

2) 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최근 5년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현황

연도	공유수면 관리청	허가건수 (건)	허가면적 (㎡)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천원)
2019	국가(지방청)	440	15,817,497	10,182,314
	지자체	8,593	29,689,356	93,064,856
	합계	9,033	45,506,853	103,247,170
2020	국가(지방청)	429	5,209,316	14,882,111
	지자체	8,742	25,126,193	40,163,978
	합계	9,171	30,335,509	55,046,089
2021	국가(지방청)	525	20,036,933	31,278,297
	지자체	10,340	44,005,820	19,367,924
	합계	10,865	64,042,753	50,646,221
2022	국가(지방청)	414	14,821,363	15,013,879
	지자체	9,423	91,263,089	73,994,085
	합계	9,837	106,084,452	89,007,964
2023	국가(지방청)	444	59,051,452	15,893,096
	지자체	10,168	58,704,128	23,142,863
	합계	10,612	117,755,580	39,035,95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부분)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 (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 · 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³/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